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 제정 : 2014. 11. 6.
□ 개정 : 2018. 3. 1.
□ 개정 : 2020. 3. 13.
□ 개정 : 2023. 6.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영향평가의 정의) "자체영향평가"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점검·분석·영향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위원회

제3조(설치) 제2조에 따른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에 관한 사항
2.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선행학습 유발방지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입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체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② 내부위원은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를, 외부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용역업체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제8조(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 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결과의 공시) 자체영향평가의 결과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0조(기타)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